

안산시의회정례회의운영에관한조례안

의안 번호	850
----------	-----

발의년월일 : 2000. 2. 8.
 발 의 자 : 김명환 의원
 외 7 인

□ 제 안 이 유

- 지방자치법(제38조 및 제41조) 및 동법시행령(제19조의4)이 각각 개정('99.8.31 법률 제6002호 및 '99.12.31 대통령령 제16672호) 되어 지방의회의 「정례회」 제도가 도입되고
- 정례회의 집회일과 회기등 정례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법령에서 위임함에 따라 안산시의회 정례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함.

□ 주 요 골 자

- 의회는 정례회를 매년 2회 개최함(안 제2조)
- 정례회의 회기는 연2회를 합하여 35일이내로 함(안 제3조)
- 정례회(제1차 및 제2차) 집회일을 정함(안 제4조)
- 정례회(제1차 및 제2차)에서 처리하여야 할 안건을 정함(안 제5조)

□ 참고사항

○ 관계법령

- 지방자치법 제38조 및 제41조
- 지방자치법시행령 제19조의4
- ※ 관계법령 개정 신·구조문 대비표 별첨

○ 참고사항

- 의회정례회의운영에관한조례준칙안
[경기도 기획 13130-104(2000.1.17)호]

안산시의회정례회의운영에관한조례안

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(이하 “법”이라 한다) 제38조 및 동법 시행령(이하 “령”이라 한다) 제19조의4의 규정에 의하여 안산시의회(이하 “의회”라 한다) 정례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개최) 의회는 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한 정례회를 매년 2회 개최한다.

제3조(회기) 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한 정례회의 회기는 연 2회를 합하여 35일이내로 한다.

제4조(집회) 영 제19조의4의 규정에 의한 정례회의 집회일은 다음 각호와 같다. 다만, 그 날이 공휴일인 때에는 그 다음날에 집회한다.

1. 제1차 정례회는 매년 6월 21일에 집회한다. 다만, 총선거가 실시되는 연도의 제1차 정례회는 의회의 의결로 7월·8월중에 따로 정할 수 있다.

2. 제2차 정례회는 매년 12월 5일에 집회한다.

제5조(심의) ①제1차 정례회에서는 법제3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행정사무감사의 실시와 법제125조의 규정에 의한 결산안의 승인 및 기타 의회의 부의안건을 심의·의결한다.

②제2차 정례회에서는 법제118조의 규정에 의한 예산안의 의결 및 기타 의회의 부의안건을 심의·의결한다.

제6조(준용)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이외의 정례회의 운영·의사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의회 회의규칙을 준용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